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정책과
행정안전부	2018년 7월 12일(목) 조간 (7. 11.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박제화 사무관 최유선
		연락처	02-2100-3568 02-2100-3570

투명한 지방 상·하수도 자산 관리로 지방재정 절감한다

#1 A시 상수도사업소의 구매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박 씨는 정수에 필요한 약품을 구매하고자 현재 각 정수장 별로 필요 수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부에는 약품과 같은 재고자산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필요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일부 정수장에는 중복하여 약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2 B군 상수도사업소의 회계담당자 김 씨는 수도관을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지 항상 고민스러웠다. 이러한 비용처리는 수돗물 생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 앞으로는 이들의 고민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 등)의 보유 자산 관리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상 근거규정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 요령을 담은 지침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 상·하수도 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상·하수도 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직영기업* 자산의 통일적·체계적인 관리·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상·하수도가 가장 대표적이며, 지방상·하수도 전체의 자산 규모는 '17년 기준 약 74조에 달한다.

< ① 지방직영기업 자산 관리 규정 신설 >

□ 상·하수도, 공영개발, 공영버스 등 전국 250개*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자산관리 및 평가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 상수도 120개, 하수도 100개, 공영개발 29개, 자동차 운송 1개 ('18.4.30. 기준)

○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취·정수시설 등 대규모 자산은 서비스 원가(수돗물 공급, 하수처리 등)를 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없어 각 기업별로 자산관리 방식이 상이했고, 정확한 원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자산을 관리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시하여 자산 관리·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먼저, 미수금*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의 미납·연체 등으로 인한 미수금은 개별 기업 자체 관리로 인해 회수 대책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회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을 의미, 급수수익과 사용료수익으로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17년 기준 상수도 직영기업 미수금은 2,971억 원)

○ 또한 취·정수시설, 관로와 같은 자산에 대한 구체적 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서비스 원가 산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전에는 시설 폐지, 관로 교체 등의 경우, 기업별 상이한 회계처리로 인해 원가 산정의 통일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지침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현금·예금 등에 대해서도 그 목적에 따른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단기 운용 현금의 경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하도록 하고, 중장기 유휴 자금은 보다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달성코자 하였다.

< ②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 조정 대상 확대 >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주기도 조정된다.

○ 그동안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어, 평가 준비에 많은 부담을 토로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는 격년제로 평가를 받게 되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경영여건이나 경영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경영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이 2년 연속 최우수('가'등급)을 받을 경우 다음해 평가가 면제(평가등급은 '가'등급 부여)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평가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③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자격요건 신설 >

□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현행 지방공기업법령은 지방공기업 감사에 대해 별도의 임명제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임원 결격사유*만을 적용하고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친인척, 업무 유관자 등에 대해서는 상임감사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다.

□ 이번 개선 대책이 반영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8일까지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뒷받침하고,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취지"라며,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함께 책임 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지방공공기관 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401개 ('18.4.30. 기준)

구분	합계	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				
		소계	공사	공단	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자동차운송
계	401	151	62	89	250	120	100	29	1
광역	70	46	34	12	24	9	9	5	1
기초	331	105	28	77	226	111	91	24	0

< 구 분 >

- 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일부(공무원 신분)로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 운영 (상·하수도 등)
- 지방공사 : 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하여 설립·운영 (도시개발, 지하철 등)
- 지방공단 : 자치단체가 100%출연, 자치단체 업무대행 (시설관리공단 등)

○ 예산 및 인력 규모('16년 결산) : 예산 46.5조원, 인력 8.2만명

○ 경영 성과 : 2,585억 원 적자('16년 결산)

※ 직영기업 △7,678억 원(상수도 △75, 하수도 △12,352, 공영개발 3,348, 지역개발기금 1,401)

※ 공사 5,078억 원(도시철도 △8,420, 도시개발 13,095, 기타 403), 공단 15

○ 재무 현황 : 자산 185.9조원, 부채 68.1조원, 자본 117.7조원, 부채비율 57.9%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 693개 ('18.4.30.지정고시 기준)

○ 출자기관 93개, 출연기관 600개

○ 예산 및 인력 규모('16년 결산) : 예산 8.4조원, 인력 3.5만 명

○ 경영 성과 : 27억 원 적자('16년 결산)

※ 출자기관 357억 원 흑자, 출연기관 384억 원 적자

○ 재무 현황('16년 결산) : 자산 16.3조 부채 4.7조

< 구 분 >

- 출자기관 :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자치단체가 10%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부산 벡스코, 경기 킨텍스 등)
- 출연기관 : 장학, 문화,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

참고 2 지방직영기업 설립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 2018. 4. 30. 기준)

구 분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28	175	241	246	251	254	254	257	265	251	250
직영기업	상 수 도	73	94	113	115	115	116	117	116	119	120	120
	하 수 도	8	22	79	82	85	87	87	90	95	99	100
	공 영 개 발	34	44	33	33	33	33	32	33	33	32	29
	지역개발기금	13	15	16	16	18	18	18	18	18	-	-
	자동차운송	-	-	-	-	-	-	-	-	-	-	1

□ 시·도별 현황

(단위 : 개 / 2018. 4. 30. 기준)

시도별	직 영 기 업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공영버스
계	250	120	100	29	1
서 울	2	1	1	-	-
부 산	2	1	1	-	-
대 구	2	1	1	-	-
인 천	3	1	1	1	-
광 주	2	1	1	-	-
대 전	2	1	1	-	-
울 산	2	1	1	-	-
세 종	3	1	1	1	-
경 기	72	31	31	10	-
강 원	23	15	5	3	-
충 북	17	8	7	2	-
충 남	29	14	11	4	-
전 북	17	9	7	1	-
전 남	19	8	8	3	-
경 북	26	14	12	-	-
경 남	26	12	10	4	-
제 주	3	1	1	-	1

참고 3 지방 상·하수도 재정현황

□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17년 결산기준)

○ 경영성과 : 당기순손실 △12,893억원 (상수도 △879억원, 하수도 △12,014억원)

<당기손익 현황> (단위: 개,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계	△14,145	△12,427	△12,893
상수도	△870	△75	△879
하수도	△13,275	△12,352	△12,014

○ 재무현황 ('17년 결산기준)

구 분	자산	부채	자본
계	73조 6,680억원	6조 5,335억원	67조 1,345억원
상수도	32조 73억원	6,613억원	31조 3,460억원
하수도	41조 6,607억원	5조 8,722억원	35조 7,885억원

□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 ('15년 ~ '17년)

구 분		'15년	'16년	'17년
상수도	평균요금(원/m^3)	659.8	684.3	701.4
	평균원가(원/m^3)	819.1	833.9	860.9
	요금현실화율(%)	80.6%	82.1%	81.5%
하수도	평균요금(원/m^3)	399.0	469.6	514.8
	평균원가(원/m^3)	1,070.6	1,119.7	1,164.8
	요금현실화율(%)	37.3%	41.9%	44.2%

참고 4 지방직영기업 자산 관리 지침의 기대효과

미수금 관리	- 미수금 회수가능성 판단에 대한 합리적 기준 부재 - 158억원에 이르는 대손충당금* *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미수금	➡ - 개별 지방직영기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회수가능성 판단 기준 설정 - 실효성 있는 회수대책 수립을 통한 미수금 회수 촉진 - 미수금 회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건전화 도모
재고 실사 관리	- 계량기 등 보유 재고자산의 품목 및 수량 파악 미비 - 중복 구매 문제 발생 가능 - 미사용 보유 재고자산까지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경우, 비용 과다 계상 문제 발생 가능	➡ - 주기적 재고 실사를 통한 보유 재고자산의 품목 및 수량 등 현황 파악 - 중복 구매 문제 발생 가능성 차단 - 미사용 보유 재고자산에 대한 비용 처리를 막음으로써, 비용 과다 계상 문제 발생 가능성 차단
유형 자산 관리	- 건물, 수도관 등 유형자산을 취득·보관·처분하는 경우,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회계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서비스 원가에 통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 유형자산의 취득·보관·처분 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개별 지자체의 서비스 원가에 통일적·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무형 자산 관리	- 무형 자산 관리에 관한 기준이 없어 서비스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	➡ - 무형자산에 대한 관리 기준 제시를 통해, 서비스 원가에 통일적·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현금 관리	- '16년 지방상하수도 직영기업 보유 현금·예금은 2조 5억 원에 달함 - 중장기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이 없어, 계획적 자금 관리에 한계 존재	➡ - 중장기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설투자 등에 사용될 자금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 - 중장기 자금운용계획 수립 결과 유휴자금 등 발생 시 회전기금 등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참고 5 2018년 경영평가 대상기관 현황

◆ 평가대상 : ('17)345→('18)241개 공기업(공사 58→59, 공단 83→87, 상수도 115→0, 하수도 89→95)
- ◦ 광역 공기업 : 61→54개(공사 34, 공단 12→13, 상수도 8→0, 하수도 7)
- ◦ 기초 공기업 : 284→187개(공사 24→25, 공단 71→74, 상수도 107→0, 하수도 82→88)
- ◦ 증감내역 : 공사 +1, 공단 +4, 상수도 △115(격년제 평가), 하수도 +6

<광역 공기업 : ('17)61개 → ('18)54개(△7)>

유 형		평 가 대 상 기 관
도시철도(6)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도시개발(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공단 (8)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6개 특정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2개 특정공단)
관광공사(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환경공단 (1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시설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직영 (7)	상수도(0)	격년제 평가 ※ '19년 평가대상 : 8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하수도(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기초 공기업 : ('17)284 → ('18)187(△97)>

구분	계 (187)	상 수 도 (107→0)	하 수 도 (82→88)	지방공사 (24→25)	시설공단 (71→74)
서울	24	격년제 평가 ('19년 평가)	–	–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24)
부산	1		–	–	기장군(1)
대구	1		–	–	달성군(1)
인천	7		–	–	인천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강화군(7)
광주	1		–	–	광산구(1)
울산	3		–	–	울산남구, 중구, 울주(3)
세종	0		–	–	–
경기	89→61 (–28)		수원,성남,부천,안산,의정부,광명,구리,포천,오산,용인,남양주,안양,평택,동두천,이천,고양,연천,과천,시흥,여주,군포,의왕,안성,광주,김포,가평,화성,파주,양평,양주(30)	하남도시개발공사,평택지방공사,양평공사,김포·용인·화성·남양주·안산·고양·의왕·성남·광명도시공사,광주지방공사,구리도시공사(14)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 안성시, 과천시, 연천군, 오산시, 시흥시,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군포시, 포천시, 이천시, 여주군, 김포시(17)
강원	24→11 (–13)		속초,강릉,춘천,원주,동해(5)	춘천도시공사,강릉관광공사(2)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영월군(4)
충북	17→10 (–7)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음성, 옥천, 진천(7)	–	청주시, 단양군, 충주시(3)
충남	23→14 (–9)		천안, 아산, 서산, 계룡, 공주, 당진, 보령,논산, 홍성(9)	당진해양관광(1)	보령시,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4)
전북	16→9 (–7)		전주,정읍,완주,익산,남원,김제,군산(7)	장수한우지방공사(1)	전주시(1)
전남	16→8 (–8)		나주, 목포, 영암, 순천, 화순, 광양, 영광, 여수(8)	–	–
경북	33→19 (–14)		경주,경산,구미,안동,포항,칠곡,김천,영천,상주,영주,문경,영덕(12)	청도공영, 영양고추, 청송사과(3)	안동시, 문경시, 포항시, 구미시(4)
경남	29→18 (–11)		진주,김해,통영,창원,사천,거창,밀양,양산,창녕,거제(10)	통영관광개발공사,거제해양관광공사,함안지방공사,김해도시공사(4)	창원시, 양산시, 창녕군, 밀양시(4)

참고 6 감사 배제 사유 관련 유사 법령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내인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 이내인 자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3. 그 외에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⑩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 해당 금융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참고 7 상임감사 임명 제한 사유 비교

	지방공기업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법
친인척	자치단체장 또는 공사 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주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현임·전임	해당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해당 금융회사, 계열회사 등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년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자 해당회사·계열회사에서 이사 재직기간 합산 9년이상인 자	해당회사 및 계열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업무유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임직원 - 해당 공사에 출자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 해당 공사가 출자한 법인 - 해당 공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해당공사의 직전년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 해당 공사와 자기 매출총액(해당 공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직전년도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 해당 공사의 회계감사를 위해 선임된 법인 또는 그 공인회계사가 속한 법인 - 해당 공사와 기술제휴, 법률·경영 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임직원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 해당 공사와 기술제휴, 법률·경영 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